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원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1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3일
발 의 자: 의원형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김성준, 김원태,
남창진, 박강산, 박수빈,
박승진, 박철성, 봉양순,
송도호, 송재혁, 유정희,
윤기섭, 이영실, 이종태,
임종국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·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보험 청구를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함을 명시하여,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권리를 강화하고,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 복구와 관련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(안 제3조제2항).
- 나.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피해에 대해 지원받을 권리를 추가함(안 제4조제2항).
- 다.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의2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안전법」 「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(이하 “대중교통 사고”라 한다)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)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상해·사망·후유장해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」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생략)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(이하 “대중교통 사고”라 한다)로 인한 시민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</u>
② (생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제4조(시민의 권리와 의무) ① (생략)	제4조(시민의 권리와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.</u>
② ~ ④ (생략)	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
<u><신설></u>	<u>제4조의2(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)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상해·사망·후유장해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」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.</u>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상해·사망·후유장해에 대한 피해구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,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·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 청구를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함을 명시하여,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권리를 강화하고,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부서(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)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5년도 대중교통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사업명	예산액(천원)
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	2,184,523

※자료: 2025 서울시 예산서

※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5.1.~ 2025.12.
- 지원대상 :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시민(외국인 포함)
- 추진방법 : 보험계약 체결을 통한 시민안전보험 운영
- 사업의 주요내용 : 화재, 폭발 사망 등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 지급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2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